

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

•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‘○’ 표시를 합니다.

운영기관	미추홀구청 건축과		심의일자	2026. 5. 22.	
건축종별	[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√] 기타				
건축주	오*금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				
	지번	628-43	관련지번		
	대지면적	220.6 m²	용도지역(지구, 구역)	일반상업지역, 방화지구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90.9 m²	건폐율	41.20 %	층수 지하 : 지하1층 ~ 지상3층
	주용도: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		구조:	연와조	건축물 동수 1 동
	최고높이	- m	용적률	113.05 %	연면적 합계 249.39 m²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		
	(해 체)분야	○ 인근지에 접한 건축물에 대해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민원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 ○ 지하층에 대하여 면밀한 구조 검토 등을 통하여 안전한 해체 계획을 수립할 것 ○ 도로변은 쌍줄비계 설치 검토할 것 ○ 지하층 존치 구조물 전체를 해체하는 계획 및 방안을 제시할 것(배면 보강 및 추가 안전성 검토 실시) ○ 비계 벽이음 시 평면상 후퇴되는 구간 벽이음 방안을 제시할 것 ○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70dB → 65dB로 변경하여 해체계획서에 수록 하고 소음측정기 위치를 도서에 명기할 것			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√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 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	

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

•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‘○’ 표시를 합니다.

운영기관	미추홀구청 건축과		심의일자	2026. 5. 22.	
건축종별	[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√] 기타				
건축주	한국*업인력관리공단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				
	지번	1389-2	관련지번 외 1필지		
	대지면적	5,463.3 m²	용도지역(지구, 구역) 일반공업지역, 국가산업단지, 공공시설구역	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723.73 m²	건폐율	- %	층수 지하 : 지하1층 / 지상5층
	주용도: 공동주택 및 근린시설 등		구조: 철근콘크리트조, 조립식 경량판넬	건축물 동수	4 동
	최고높이	15 m	용적률	- %	연면적 합계 3,761.50 m²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		
	(해체)분야	○ 기계실 해체 시 슬래브 해체 전 토사채움(인력)으로 계획한 내용에 레이커, 띠장 설치 방안을 고려하여 검토할 것 ○ 매립토층과 퇴적토층의 점착력이 “0”이므로 비탈면 안정성 검토를 통해 안정한 기울기로 보완하여 제출할 것 ○ 자립식 흙막이의 경우, 해체 시 상부 버팀보 간섭으로 인해 인발이 곤란하므로 계획을 변경 및 보완할 것 ○ 서측 담장 존치 관련하여 대피소 해체 영향 등 면밀히 검토하여 해체 계획을 이행할 것 ○ 남측부 고압선과 관련하여 장비 및 비계 등 설치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치를 진행할 것 ○ 기계실과 인접한 곳에 중량장비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계획서에 내용을 추가할 것 ○ 기계실과 인접한 작업 장비 중 최대 중량을 기준으로 지하외벽 영향 검토를 추가할 것 ○ 사면 안정성에 대하여 보완 검토할 것(자립식 가시설 불안 해소)			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√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 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킴으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	

•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‘○’ 표시를 합니다.

•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‘○’ 표시를 합니다.

•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‘○’ 표시를 합니다.

•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‘○’ 표시를 합니다.

•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‘○’ 표시를 합니다.